

「KDBpension 정기예금」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KDBpension 정기예금」 (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 ① 이 예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3. “퇴직연금사업자”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3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관리업무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4.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로써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5.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조 가입 자격

이 예금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4조 예금의 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2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1. 일반형
예금가입일 및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을 만기시까지 적용
2. 사전지정운용형(디폴트옵션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에 따라 시행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제도)의 정기예금으로 예금 가입일 및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을 만기시까지 적용

제5조 계약기간

- ① 일반형 예금의 계약기간은 가입시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또는 5년 중 택일하여야 하며, 가입 후에는 계약기간을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내에서 만기일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이하 “만기일지정식”이라 합니다.), 가입 후에는 계약기간을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③ 사전지정운용형(디폴트옵션형) 예금의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제6조 만기처리방법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1. 고객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하며, 재예치 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만기일지정식의 경우 최초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재예치기간을 1년인 계약으로 정합니다. 다만, 자동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 만기시마다 별도의 의사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재예치 의사 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하지 않으며,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에 따라 처분합니다.
3. 은행은 고객에게 재예치 됨을 설명하고, 고객이 통지를 요청한 경우 고객이 신청한 방법(SMS 또는 이메일)으로 통지합니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며, 자동재예치가 불가합니다.
2. 사전지정운용형(디폴트옵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이 예금이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편입된 경우 고객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재예치하며 제1항 제3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제6조의2 재예치 기준일

이 예금의 만기일을 재예치일로 하되,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만기일의 다음 영업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

제7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

- ① 이 예금의 이율은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이하 '예금일'이라 합니다.)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만기일지정식의 경우 계약기간 내 포함되는 최장기 기간별 이율을 적용합니다.
- ② 이 예금을 만기일(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의 다음 영업일)에 지급청구한 때에는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제8조 중도해지이자

- ①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형(디폴트옵션형) 예금을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중도해지사유로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한 때에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기간별로 예금일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한 다음의 이율(단, 제3항 제7호 및 제13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별 만기 이율)을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1.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 해당 계약기간별 만기 이율
 2. 계약기간이 1년 초과인 계약
 - 가. 1년 미만 예치시 : 이 예금의 1년 만기 이율
 - 나. 1년 이상 2년 미만 예치시 : 이 예금의 1년 만기 이율

다. 2년 이상 3년 미만 예치시 : 이 예금의 2년 만기 이율

라. 3년 이상 예치시 : 이 예금의 3년 만기 이율

④ 제2항의 중도해지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가입자의 퇴직 등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
2. 연금지급을 위한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4.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5.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6.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탁업무 사임
7.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이 상품에서 인출하는 경우
8.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9. 가입자의 사망
10. 가입자의 해외이주(단,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한함)
11.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단,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한함)
12. 동일 자산관리 기관 내 계약 이전 및 제도 전환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제8조의2 만기후 이율

이 예금을 만기일 후에 지급 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다음 각 호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1. 만기후 1년 이내 : ‘일반정기예금(1년)’ 기본이율의 1/2
2. 만기후 1년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제9조 분할인출

① 이 예금은 만기인출을 포함하여 3회까지 분할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인출을 포함하여 3회까지 분할인출 할 수 있습니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분할인출 횟수에서 제외하며 분할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분할인출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1. 가입자의 퇴직 등에 따른 급여 지급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
2. 연금지급을 위한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4.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이 상품에서 인출하는 경우
5. 동일 자산관리 기관 내 계약이전 및 제도 전환을 하는 경우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③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분할인출 하는 경우에는 분할인출 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분할인출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제10조 제한사항

이 예금은 담보제공, 질권설정 및 양도양수가 불가합니다.

제11조 통장발급

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특약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

(시행일) 이 특약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

(시행일 등) 이 특약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제5조는 기존고객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부칙(3)

(시행일 등) 이 특약은 201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부칙(4)

(시행일 등) 이 특약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부칙(5)

(시행일 등) 이 특약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부칙(6)

(시행일 등) 이 특약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부칙(7)

(시행일) 이 특약은 202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이 예금의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 단, 제6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입 고객이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만기도래하는 예금은 자동재예치가 되나 그 이후는 자동재예치가 불가합니다.

부칙(8)

(시행일 등) 이 특약은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전지정운용형(디폴트옵션형) 예금이 시행일 이후 자동재예치되는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